

대전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127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9. 27.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10121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명의신탁 및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4. 체결된 명의신탁을 각 해지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각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2. 16. 접수 제8806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728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